

[현장논단]

기후변화와 건설노동자

김 경 신*

나는 타워크레인 기사로 24년 동안 일해온 건설노동자이다. 덤프, 굴삭기, 레미콘, 크레인 같이 중장비를 운영하는 건설노동자는 장비 특성상 차량 내부에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건설노동자들에 비하면 기후변화에 그나마 영향을 덜 받는 편이다. 허허벌판에서 아파트를 짓고 공장을 세우고 도로를 만들고 전봇대를 타는 옥외 건설노동자들은 폭염, 폭우, 폭설, 혹한, 강풍 등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극한기상에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는다. 건물 보수, 내장, 인테리어, 설비 등을 하며 시설 내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은 공사진행방법, 분진, 소음, 전기 설비등의 이유로 에어컨이나 난방기구를 사용할 수 없어서 옥외 건설노동자 못지않게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경험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근무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더워도 너무 덥다. 내가 처음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을 때, 선배들은 타워 조정석에 에어컨도 없이 일하면서 조금만 참으면 금방 시원한 계절이 온다며 허허 웃곤 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조정석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너무 더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들을 하신다. 중장비 노동자 이외의 옥외 건설노동자들은 에어컨도 없고 그늘도 없는 노지에서 일을 한다. 가만히 서 있는

* 타워크레인 기사 24년차

것도 힘든 폭염에 자재를 나르고 자르고 붙이고 중량물을 다루면서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 6시까지 일을 한다. 그럼, 점심시간도 되기 전에 온몸이 땀으로 속옷까지 모두 젖는다. 작업복에는 땀이 나고 마르기를 반복하면서 두 줄 세 줄의 소금꽃이 핀다. 거의 대부분의 건설현장은 작업이 끝나고 나서 땀을 씻어낼 샤워장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설 수도가에서 대충 땀을 닦아내고 집으로 간다. 불행 중 다행인지 그나마 코로나 때 가설수도가 늘었다.

일을 하다 잠시 땀을 식힐 그늘막이나 휴게시설이 많지 않고, 쌓아놓은 자재나 구조물의 그늘에서 위험하게 잠시 쉬면서 땀을 닦고 물 한모금과 식염포도당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다시 작업을 진행한다. 폭염시 온열질환 예방 노동부 가이드라인은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하고 있지만 공사기간 등을 이유로 잘 지켜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비가 감당할 수 없이 많이 오는데 예측도 안 된다. 짧은 시간에 많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비가 내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열대야와 폭염으로 경보가 발령되고 동시에 폭우 경보가 발령되는 이상한 경우가 올해 들어 여러차례 있었다. 폭우 예보로 일을 할 수 없어 출근을 하지 못하면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은 일당이 날아가고, 비 예보가 없어 출근하면 갑자기 폭우가 내려 비를 몽땅 맞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늘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 중장비 노동자나 일반 건설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도 발생했다.

한파가 계속되고 눈이 많이 온다. 겨울이 길어지고 눈이 많이 내리면서 일을 쉬는 날이 늘어나고 있다. 영하의 기온이 계속되면서 장비 이상으로 작업이 중단되고 장비가 얼어서 히터가 없는 타워 꼭대기에서 토치로 몇 시간 썩 장비를 녹이는 일도 종종 있다. 옥외 노동자들은 양말을 두겹, 세겹씩 신고 장갑을 껴도 손발이 뽕뽕 얼고 손을

녹일 난방기구가 없어 동동거리면서 일을 한다. 눈이 많이 내리면 눈을 다 치우거나 녹을 때까지 며칠씩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건설현장의 여성노동자들이 고유하게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가?

기후변화 대응책에 여성은 없다. 건설은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 노동집약적 산업이지만, 여성 건설노동자도 현재 약 10% 정도이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건설현장과 관련한 정책에는 여성 건설노동자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 여성 건설노동자들은 안전보호장구 및 공도구 사용에서 배제되곤 한다. 여성의 신체조건이 남성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보호장구와 공도구가 남성의 신체조건에 맞추어 제작되어 있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안전장구조차 대체로 여성건설노동자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작업 공도구 사용이 힘들어 사고 위험이 높다. 20만 명이 넘는 여성 건설노동자들도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환경변화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 건설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성 노동자들에게 맞는 안전장구와 공도구가 제공되어야 하며 여성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여성고용과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나 제제 방안을 마련하여 건설현장에 여성건설노동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능습득이나 향상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 여성 건설노동자들은 대부분 저임금으로 보조적인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 기능훈련이나 임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교육에서 배제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로운 기능을 습득하지 못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하는 공법 및 작업환경에 적응할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아, 여성 건설노동자들은 저임금 직종이나 없어지는 공법의 노동자로 계속 머물다 타 산업으로 이직하거나 실업자로 건설현장을 나가게 된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진다. 건설현장에서 여성노동자를 위한 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고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기후변화로 현장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해서 시설 설치비가 증가해서 여성노동자를 위한 시설은 따로 둘 수 없다고도 이야기한다.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를 사용해야 하면 앞에서 쓴 것처럼, 남성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여성 건설노동자들은 계속 저임금 직종으로만 일하도록 요구받다 사라진다. 여성 건설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질 좋은 새로운 일자리 찾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지원과 자원이 필요한가?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하다. 2021년 건설노조에서 토목건축 현장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 지금 일하는 현장에 식수나 제빙기가 가까운 곳에 있나요?

| | | |
|-----------------------------|-----|-------|
| 없다 (혹은 너무 멀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 197 | 13.6% |
| 20미터 이내 | 224 | 15.4% |
| 50미터 이내 | 345 | 23.7% |
| 100미터 이내 | 367 | 25.3% |
| 200미터 이내 | 320 | 22.0% |

○ 쉴 때는 그늘진 곳에서 햇볕이 완전 차단된 곳에서 쉬니까?

| | | |
|-------------------|-----|-------|
| 햇볕이 완전 차단된 곳에서 쉰다 | 487 | 33.5% |
| 아무데서나 쉰다 | 966 | 66.5% |

○ 온전한 휴게실(냉난방기 설치 등)에서 쉬는 때는 어느 정도 되나요?

| | | |
|---------------|-----|-------|
| 없다 | 763 | 52.5% |
| 휴게실이 멀어 가기 힘들 | 338 | 23.3% |
| 가끔 휴게실에서 쉰다 | 293 | 20.2% |
| 대부분 휴게실에서 쉰다 | 59 | 4.1% |

○ 작업하는 공간 가까운 곳(100미터 이내)에 간이 그늘막이 설치돼 있습니까?

| | | |
|--------|-----|-------|
| 설치돼 있다 | 793 | 54.6% |
| 없다 | 660 | 45.4% |

○ 쉴 때,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쉴 만한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까?

| | | |
|------------|-----|-------|
| 마련돼 있다 | 137 | 9.4% |
| 있긴 한데 부족하다 | 842 | 57.9% |
| 없다 | 474 | 32.6% |

○ 폭염기 세면장 상태는 어떤가요?

| | | |
|-----------------|-----|-------|
| 씻을 수 있을 데가 못 된다 | 656 | 45.1% |
| 만족스럽다 | 415 | 28.6% |
| 세면장이 없다 | 382 | 26.3% |

○ 폭염기 세면장은 충분히 설치돼 있나요?

| | | |
|---------|-----|-------|
| 충분히 있다 | 163 | 11.2% |
| 절대 부족하다 | 442 | 30.4% |
| 부족하다 | 498 | 34.3% |
| 모르겠다 | 99 | 6.8% |
| 세면장이 없다 | 251 | 17.3% |

<폭염대책 이행>

○ 폭염 특보 발령시(체감온도 33도 이상) 1시간 일하면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에선 규칙적으로 쉬고 있습니까?

| | | |
|--------------------------|-----|-------|
| 1시간에 10~15분씩 규칙적으로 쉬고 있다 | 332 | 22.8% |
| 쉬지 않고 봄, 가을처럼 일한다 | 293 | 20.2% |
| 재량껏 쉬고 있다 | 828 | 57.0% |

○ 휴식시간 보장, 식수 제공, 휴식 장소 제공 등을 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권고사항이 법으로 강화돼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공지 받은 적 있습니까?

| | | |
|-----------------|-------|-------|
| 현장에서 공지 받은 적 있다 | 453 | 31.2% |
| 현장에서 공지 받은 적 없다 | 1,000 | 68.8% |

○ 폭염 관련 안전보건 교육을 받은 적 있습니까?

| | | |
|------------|-----|-------|
| 교육 받은 적 있다 | 648 | 44.6% |
| 교육 받은 적 없다 | 805 | 55.4% |

○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되면 작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35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되면 무더위 시간대에 작업을 중지하게 돼 있습니까. 관련 사항이 지켜지고 있나요?

| | | |
|----------------------------|-------|-------|
| 폭염으로 작업 단축, 조정, 중단 된 적 있다. | 346 | 23.8% |
| 폭염이어도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 | 1,107 | 76.2% |

○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적 있습니까?

| | | |
|----------------------------|-------|-------|
| 폭염으로 작업 중단 요구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 265 | 18.2% |
| 폭염으로 작업 중단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 124 | 8.5% |
| 모르겠다 | 1,064 | 73.2% |

건강권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이 강화되어야 한다. 휴게시간 보장, 휴게시설 확충, 생수와 제빙기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건설중장비를 운영하며 고공이나 단부에서 일하는 타워크레인을 비롯한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대한 폭염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노동시간 단축, 작업중지권 보장과 임금보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노동자가 실제 온열질환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법적 의무가 되어야 한다.

매년 폭염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폭염 지침을 발표한다. 휴식 시간과 작업시간 조정 및 중지를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침에 불과해 빠른 시간 안에 건물 등을 완성하려고 속도전을 치르는 건설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으로 사망한 전체 29명의 노동자 중 20명이 건설노동자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이 아닌 법률로 강제해야 폭염 시기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온열규정에 ‘열사병 발생 옥외노동산업’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폭염에 취약한 옥외노동 항목을 추가해야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공사 중단, 지연, 연장, 단축, 조정에 따른 소득 보장을 위한 악천후 수당 법제화가 필요하다.

수주산업인 건설산업 특성상 건설노동자들은 고용과 이직을 반복하는 등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더해 대표적인 옥외산업인 건설산업은 기 영향에 민감하여 혹서기, 혹한기, 대설, 장마 시기에는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2022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실태조사’에 의하면 건설노동자는 월평균 18.6일 고용되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보다 고용 상황이 더 열악한 경우도 많다. 이제는 기존의 장마, 대설에 더하여, 폭염과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에도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기상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장차 우리나라도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고 잦은 비와 눈, 폭염 등으로 인해 농업 및 건설업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이처럼 급격한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혹한, 폭우, 폭설, 폭염, 미세먼지 등의 악천후 발생 일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공사중단 일수도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건설노동자의 실질소득은 더욱 더 감소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악천후를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데 악천후가 발생하여 건설노동자가 일하지 못하여 소득이 감소할 경우 건설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할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악천후 수당 지급을 위한 제정은 정부와 건설자본, 건설노동자가 같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노후와 생활 안정을 위해 1997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만들어져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악천후 상황 속에서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악천후 등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인한 임금손실이 보전된 사례가 있다. 2018년 유례없는 폭염으로 광주시 아파트건설현장 야외 근로자 사망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공공건설현장 야외 근로자 건강 및 안전을 위해 긴급조치 차원에서 폭염경보 발효 시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작업하고 오후 작업 중단 및 2시간 이내 임금을 보전하는 정책을 2018년 8월 7일부터 시행하여 계약대상자에게 선지급 후계약금액조정을 통해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2018년 기준 34개 현장, 6,230명, 3억1천1백만원을 보전한 사례가 있었다.

한국가스공사도 2018년 국무총리의 긴급지시(폭염 심한 낮 시간대 작업 중지)에 적극 부응하고자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현장에 대한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시행방안으로 폭염 경보 발령 시 오후 1~3시에 야외 작업을 금지하고 작업 금지 시간에 대해 최대 2시간에 대한 임금 보전을 2018년 기준 7개 건설현장 2,354명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21년 경기도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작업현장 폐쇄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들을 위하여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일일 건설노동자들이 재

난 상황 탓에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전해 이들의 안전과 생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으로 현장을 폐쇄할 경우)과 폭염 정보(일 최고기온 35℃ 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할 경우), 호우 경보(강우량이 3시간에 90mm 또는 12시간에 180mm 예상될 경우) 상황으로 공사감독관(감리자)이 공사를 중지할 경우 연간 35,000명, 약 17억원 규모로 1일 최대 8시간 이내 작업 중지된 잔여 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였다.

친환경 소재 건축 및 공법 사용시 입·낙찰 가점을 부여하여 친환경 건설현장으로 유도해야 한다.

2015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으로 각 당사국들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할 것을 채택하여 2021년 우리나라도 203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436.6백만톤으로 줄이겠다고 의결하고 기후협정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하였다. 또한,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조건에서 건설산업은 상당한 양의 탄소배출을 하는 산업으로 전 세계 1/3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자원이 건설 부문에서 소비되고 있고 특히 시멘트는 건설공사에서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자재이다.

이에 국제건설목공노련(BWI)은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건축재정 대신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탄소세, 부유세, 자본거래세를 부과하는 한편, 공공입찰에서 ILO 국제노동기준과 함께 탄소배출 감축을 입찰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고 있다. 또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 발주처로서 노동권과 기후변화 대응을 발주조건에 명시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공공공사 입찰 전 특수계약조건에 탄소 배출 감축 조건을 명시하고 탈 탄소 건축자재 사용 시 공공입찰 참여 인센티브 적용 등 민간공사 탄소 배출 감축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 저에너지 시공, 건설폐기물 최소화 등 지역생활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탄소 배출감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나 방안을 마련할 때, 여성이나 청년, 이주노동자 등 그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건설 등 기후변화에 민감한 직종의 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노동조건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소통과 노력이 필요하다.